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8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용만 · 유동수 · 이인영
문진석 · 강준현 · 박용갑
이강일 · 조승래 · 이정문
김영진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기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예상되므로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로서 기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득이한”을 “제32조의2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관장의 직무정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그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
2.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
2.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
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
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